

'09. 5. 14(목)

전문연구요원제도
설명회 교재

전문연구요원 제도 설명회



병무청 산업지원과

www.mma.go.kr

목 차

1. 서 론	1
2.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요	3
3. 연구기관 선정	14
4. 지정업체 관리	23
5. 인원배정	25
6. 전문연구요원 편입	28
7. 전문연구요원 관리	37
가. 복무관리	37
나. 전직제도	42
다.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47
라. 국외여행 허가	49
마. 수학	55
8.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56
9. 교육소집	57
10. 신상이동통보	61
11. 의무종사 만료처분	63
12. 지정업체 실태조사	64
13. 지정업체 평가	69
14. 관련부책 정리요령	73
15. 참고사항	76

전문연구요원 제도

序 論

1. 兵役義務

- 가.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국민개병주의라 하여 모든 남자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모두 징집 또는 모집되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자원과 현역 복무인원간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복무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병역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軍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국가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1973년부터 병역대체 복무 제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 兵役代替服務 制度의 種類

가. 대체복무제도 분류

- 광의의 대체복무제도 :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복무유형이 결정되고 국방 구성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현역 등의 복무형태를 제외한 대체복무제도
- 협의의 대체복무제도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복무유형이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복무형태는 대체복무가 아닌 것으로 봄

나. 대체복무제도 종류

구 분		시행연도	복무분야 및 기관	복무기간
현역 전환복무	전투경찰대원	70년	·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 · 경찰서	24개월
	경비교도대	81년	· 교정시설 경비 보조 · 교정시설	24개월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 요원	95년	· 경비 · 감시 등 행정보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6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	95년	· 개발도상국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봉사활동 · 모로코 등 18개국 복무	30개월
	예술요원 체육요원	95년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목적 지원 · 예술 · 체육해당분야 종사	34개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73년	·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 기업체, 대학교 등	3년 (‘05.7.1부터)
	산업기능요원	73년	· 산업체 등 부족인력 지원 · 기업체, 등	34월(현역) 26개월 (보충역)
기타 병역대체복무	국제협력의사	95년	·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 몽골 등 7개국 복무	3년
	공익법무관	95년	·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업무 지원 · 법률구조단, 법원 등	3년
	공익수의사	05년	· 공익목적 가축전염병예방	3년
	징병전담의사	99년	· 징병신체검사 실시 · 병무청	3년
	의무경찰	82년	· 치안업무 보조 · 경찰서	24개월
	의무소방원	01년	· 소방업무 보조 · 소방서	26개월

專門研究要員 制度의 概要

1. 主要內容

- 가. 기업체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추천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으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 받아야 한다.
- 나. 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모기업이 있어야 한다.
- 다. 지정업체로 선정 받은 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까지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 라.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정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후 편입하게 되며, 편입된 이후에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분야에서 종사하여야 한다.
- 마. 지정업체로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통보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 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 연구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종사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업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근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실종사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아.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1년6월)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종사한 사람 등으로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가 폐업·선정 취소된 경우 등에는 3개월(부득이한 경우 3월 연장가능)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 자. 지정업체의 장은 4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차.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기초 군사훈련(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

2. 용어의 정의 : 이 교재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령”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정업체”라 함은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체를 말한다.
8.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
10.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11. “연구개발 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12. “해당분야”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13. “전직유발업체”라 함은 영 제85조제2항제3호(다만, 생산설비 이전과 동일법인내의 폐쇄·축소사유는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한 업체를 말한다.
14. “복무관리 부실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경고·주의처분을 받은 업체 등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5. “복무관리 우수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등급으로 평가받은 업체를 말한다.
16. “자연계 학사”라 함은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
17. “의무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8. “교육훈련”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정신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방병무청”이라 함은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함은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20. “병가”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21. “무단결근”이라 함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22. “국내 파견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 계약서, 기술협력계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3. “국내출장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 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沿 革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73.3.3 시행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로 시행 ○ 한국과학원생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종사자 ○ 공업.광업.건설업.에너지산업.수산 및 해운계의 주요기간산업체 ○ 학술.예술.체능특기자 ○ 복무기간 : 5년
'81.4.17. 영 개정	○ 해양경찰대 경비합정승선자 추가 ○ 자연계연구기관 추가
'81.12.31. 영 개정	○ 농촌지도요원 추가
'83.12.31. 법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기능특기자 추가
'84.12.31. 법 개정	○ 한국과학기술원생중 신설된 학사과정 제외
'89.12.31. 법 개정	○ 병역법에서 분리(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로 분리)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학술.예술.체능특기자 폐지 ○ 경비합정 승선요원 폐지 ○ 농촌지도요원 폐지 ○ 군조달기관 제외
'91.9.11. 영 개정	○ 자연계대학원 선정근거 마련
'92.12.2. 법 개정	○ 농어업분야 신설 ○ 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 3년)
'93.12.31. 법 개정	○ 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 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변경 ※특례보충역용어 삭제
'97.5.1. 법 개정	○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 복무기간 단축 근거 마련 (보충역의 복무기간단축 36개월 → 28개월)

개정일자	주요내용
'99.12.28. 영 개정	○ 병무심의위원회 폐지 ○ 편입당시 비해당분야 종사자를 위반사안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 국내수학자 전문연구요원 출원기일 연장 ○ 지정업체 선정원 제출시기 변경(업체 → 추천권자)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 상호간의 전직, 파견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사항을 신상이동통보로 갈음토록 함 ○ 복무관리가 우수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다음해 실태조사면제제도 신설
'01.3.27. 영 개정	○ 지정업체 세부 선정기준 및 산업기능요원 세부 편입기준을 정함 ○ 지정업체 선정 취소사유 강화 : 복무관리 부실업체 ○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 : 2년 → 1년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 병가로 인한 휴직, 결근자의 의무종사기간 산입기준 ○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 ○ 지정업체 승계시 관련증거서류 제출
'01.12.31. 영 개정	○ 기초의학전공자 전문연구요원 편입허용
'02. 8. 21. 영 개정	○ 자연계대학원의 의학계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시 현행 총괄배정에서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의 3월미만 실시하는 교육·파견에 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제도 폐지 - 승인 : 3월이상 - 신상이동통보 : 3월미만
'03. 9. 3. 법 개정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수료자 전문연구요원편입 ○ 지정업체의장 4촌이내 혈족자 편입·전직제한 ○ 복무기관 단축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산업기능요원 : 36월 ⇒ 34월 (보충역의 경우 28⇒ 26월)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04. 2. 9. 영 개정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 6월 → 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6월 → 입영(소집)일 5일전
'04. 12. 30. 법 개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 : 4년 → 3년 ○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 근거마련 ○ 편입취소된 자가 지원에 의하여 입영시 복무기간 단축근거 마련 ○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자 편입 또는 전직한 업체 처벌근거 마련 ※ 시행시기 : 2005. 7. 1이후
'05. 3. 31. 법 개정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서 제도 폐지 ※ 시행시기 : 2005. 7. 1이후
'05. 5. 31. 법 개정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시행시기 : 2006. 1. 1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05. 6. 30. 영 개정	○ 무단결근자 등의 복무기간 제외 근거 마련 ·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자 : 편입 취소 · 통산 8일미만의 무단결근기간 :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 ○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 평가실시 근거 마련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시기 조정 · 7월 ⇒ 6월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인제도 폐지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업체장의 추천서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 행 - 현역 :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개 정 - 현역 :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직무분야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05. 12. 26. 영 개정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시행시기 : 2006. 1. 1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06. 3. 2 법 개정	○ 지정업체의 장 의무자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시행시기 : 2006. 9. 25
'06. 9. 25 영 개정	○ 지정업체의 장 의무자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시행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종사 2년 경과한 때 ⇒ 1년 6월 경과한 때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 ⇒ 폐지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 3월이상 국내 교육훈련·지정업체가 아닌 파견근무시만 승인 · 3월미만 국내교육훈련·파견근무 :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 같음 ·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이동통보로 같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절차 개선 · 승인 ⇒ 신상이동통보로 같음

개정일자	주요내용
'07. 5. 1. 법 개정 (시행일 : '07.10.1)	○ 복무중인 행정관서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 복무기간 : 잔여기간
'07. 7. 27. 법 개정 (시행일 : '08.1.1)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도입 · 해군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복무기간 : 항해사·기관사로 3년간 승선복무
'07. 9. 27. 영 개정 (시행일 : '07.10.1)	○ 행정관서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 학력별 기술자격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
'07. 12. 28. 영 개정 (시행일 : '08.1.1)	○ 승선근무 예비역의 교육소집 · 최초로 승선근무 하기 전 (단, 승선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
'08. 10. 8. 영 개정 (시행일 : '08.10.8)	○ 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로 같음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절차 개선 ·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법인단위로 개선 ○ 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 요건 완화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할 경우 제한기간 완화 ○ 파견근무 범위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 ·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간 공동연구 수행시 파견 범위제한 완화 ○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 처벌기준 완화

개정일자	주 요 내 용
'09. 4. 1. 법 개정 (시행일 : '09.10.1)	○ 신상이동통보사항 일부 폐지 · 교육소집 받지 아니한 때,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수 없을 때 ○ 비 해당분야 종사자 형사처벌 ○ 편입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취득자 형사처벌 ○ 금품수수 등을 통한 부정 편입자 편입취소 등

研究機關 選定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 동법 시행령 제72조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2. 절 차

구분	신청 · 접수	지정업체 추천	지정업체 선정	지정업체 통보
일 반 지 정 업 체	매년 6월 중에 추천권자 에게 접수	매년 7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장이	매년 11월중 선정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벤처기업 부설연구 기 관	매년 1월 중 또는 6월중 (벤처 2회)	매년 2월 말일 까지 또는 7월 31일까지(2회)	선정	매년 4월중 선정결과 통보

추천 및 평가 내용

- 지정업체 추천요령 : 선정원서에 추천점수 및 의견 기재
 - 자체평가기준 : 연구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비, 연구소 인정기간, 연구성과, 가점 부여(신기술인증기관 등)
 - ※ 업체별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구분)별로 등급 구분
 -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는 지정업체 선정 제외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방향

- ※ 지원인력 2,50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지정업체수 1,700개 범위내에서 신규선정 규모 결정

3. 분야별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

분 야 별	추천권자	추 천 기 준
자 연 계 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1. 기업부설 연구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 단,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벤처기업 포함) 2인 이상 2.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산하 연구기관 3.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 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부설연구기 관 4.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 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5. 지역혁신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협력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원등)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ERC/ SRC/ /MRC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해 각급 대학에 지정된 우수 연구 집단인 연구 기관
인문·사회계	소관중앙행정 기관장	○ 석사이상 인문사회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 확보
대학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초의학계 포함)
방 위 산 업	국방과학연구소장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접수하여
추천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병무청에 제출됨
- 소요인원 요청은 선정원 신청시 함께 요청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등급(점수)과 지방청 평가결과에 따라 인원배정
(지원인력대비 지정업체의 과다로 추천등급(점수) 등이 낮으면 인원배정에서
제외됨)

4. 연구기관 선정요건

가. 자연계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법인 다만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는 2인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한 업체

나. 병무청장이 정한 세부 선정기준

- 1)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로서 연구소 단위별로 선정
- 2) 동일법인의 2개 이상의 연구소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각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가 주/ 부소재지로 인정받은 경우 연구전담요원 산정은 주소소재지만 산정하여 선정
- 3)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5. 연구기관 선정 제외

- 가.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신규 신청 중인 업체 포함)되어 있는 연구기관
- 나.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다.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 2004년도 이후 평가등급 A 등급 연구기관만 선정(중소기업의 경우 B등급까지)

6. 연구기관 신청시 구비서류

○ 지정업체선정원서

♠ 유의사항 ♠

※ 병무청에 제출하던 연구기관신청 구비서류는 '06.7.1 모두 폐지하였으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권자가 자체 규정한 신청구비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연구시설(과학기술부 고시 2005 - 21 : 2005. 7.6 제6조 참조)

- 다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실험실)가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함.

※ 대학실험실 창업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대학실험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대학과의 사용, 임차 등의 계약서가 있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 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중인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 중인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으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 지정업체 선정원 접수마감일 이전에 연구전담요원이 교체된 경우 다만, 마감일 이후 학위취득자로 교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정업체 선정원 출원당시 재직한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법정기간 내 가입한 경우

7. 선정결과 통보

○ 관할지방병무청장 경유 업체 통보

- 인터넷 게재(사전 예고)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행정자료공개→전문연구요원

※ **2008년 지정업체 선정 현황**

○ '08년도 상반기(벤처기업) 지정업체 선정 현황 ('08.3.)

신 청	선 정	선정제외
212	40 (18.9%)	172

•선정제외내역

후순위 추 천	연구소 기준미비	전담요원 미 달	선정신청 철회 등
154 (74.8%)	9	1	8

※ 선정대상 실태조사 결과 31.0 %(58개업체중 18개) 선정 부적격 대상

○ '08년도 기업부설 연구기관 선정 현황

신 청	선 정	선정제외
395	173 (43.8%)	222

•선정제외내역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전담요원 미 달	연구시설 미 비	선정기준 (법령)미달 등
204 (91.9%)	9	2	7

※ 선정대상 실태조사 결과 8.1 %(222개업체중 18개) 선정 부적격 대상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7.10.1>

(앞 면)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신청서 ※ 유의사항: 「끓은선」란은 모두 기재, 기타 해당란에 [V]표기										처리기간 81일	
연구소명 (업체명)			기업규모		☐ 대 ☐ 중소 ☐ 벤처 ☐ 기타	대표자					
연구소 소재지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주소				전자우편				
연구소인정 (설립)	연구소인정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번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등록번호	기업공개여부					
						공개시장		종목코드번호			
연구 분야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소재 ☐ 환경 ☐ 항공우주 ☐ 생명과학 ☐ 건축토목 ☐ 기계금속 ☐ 문화 ☐ 화학 ☐ 기타()								산업분류코드		
연구 기관 선정 신청	건물	m ² (독립·미독립)			연구용자재		외 점				
	연구	구분	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이하				
	전담	연구전담요원									
	요원 총괄	소요신청인원		신청정공학과							
기간산업체 선정여부	선정 여부	기간산업체 주소				업종		신규 신청			
석사 이상 연구전담 요원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전공및학위)		병역사항	연구소 임명일자			
위와 같이 지정업체선정을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업체장 인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 참조			수수료 : 없음			
병역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기관)의 지정업체선정을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권자 인											
추천 권자 평가 등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뒷 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병역법 제36조,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시행규칙 제48조)		
작성요령	○ ☐ 표는 V로 표시 ○ 기간산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를 ○, ×로 표기(산업체와 동시에 신규 신청한 경우신규신청에 ○, ×로 표기)하고 산업체의 업종, 소재지 기재 ○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기재 ○ 연구전담요원(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여백이 부족할 시는 별지 작성 첨부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자 등만 대상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 제외)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사회계 분야 학위취득자 - 실제 연구업무에 종사(파견·휴직·병가 또는 교육소집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람만 작성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중에 학과·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석사 학위 중 첨부, 석사학위중에도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 포함)를 마친 사람은 “필”로 기재하고, 기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여자” 등으로 기재		
구비서류	○ '06.7.1 폐지		
처리절차	신 청 인 업체의장	추 천 기 관	처 리 기 관 병 무 청
	신청서 작성 결과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국방과학연구소장 결과 통보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방병무청 (사무소)

[참고사항]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연 구 기관명		소재지 (주 소)		전화 번호		
연 구 시 설	m ² 독립시설여부()	연 구 기자재	외 점	연구전 담요원	석사이상 기타 명 명	
선정취소 5년경과 여부(2002.12.31이후)		정보처리분야 산업체 선정여부 ()		산업체명		
대학교를 주소로 한 연구소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석 사 이 상 연 구 전 담 요 원						
신 청 당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구 부서	최종 학교 (전공)	확인 결과	비 고
신청후 추 가						
위 확인자		인사담당 (인)				
조사 결과	○연구소 선정기준 충족여부 · 연구시설 () · 연구전담요원 ()					
2009. . .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병 무 청 장 귀하						

-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신청당시: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
- ※ 실태조사시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사 후 3일 이내에 조사자에게 제기
-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신고

指定業體 管理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76조(지정업체의 승계)
- 병역법시행령 제77조(지정업체의 선정취소)

2. 지정업체 승계 : 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

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합병한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 합병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
-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 연구소 변경신청서 및 인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낙찰허가 결정서 및 낙찰목록사본(법원경매의 경우)
- 고용승계 확인서

나. 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업체 승계 처리

※ 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시 승계 제한('06.11.1)

3. 지정업체 변경

○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명칭,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등을 변경한 때에는 아래 서류를 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 통보서 사본

4. 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가.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나.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연구소의 인정·지정이 취소된 때

라.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위축해지·지정이 취소된 때

마. 지정업체가 선정기준(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 이내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바.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사. 복무관리 위반(신상이동통보위반, 통지서수령위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및 고용금지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지정업체의 장이 경영악화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선정취소

人 員 配 定

1. 배정자원의 판단

가. 병무청장이 병역자원 수급과 관련하여 매년 배정 기준을 정함

- 현역 등 군소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 ※ 의무사관후보생 출신 전문연구요원 부족학과(전공) 편입제한
-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배출인원 및 전년도 편입인원 감안

나.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 병역제도 개선

☞ 매년 2,500명 지원

○ 석사이상 학위자 배출 및 배정대비 편입 현황

(명)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배출	3,498	3,309	2,657	2,885	1,946	2,411	2,562	2,701
배정	3000	3,0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편 입	2,578 (2,520)	2,234 (2,139)	1,674 (1,572)	1,557 (1,450)	1,537 (1,409)	1,971 (1,812)	2,078 (1,926)	1,201 (1,130)
%	84.0	71.3	62.9	58.0	56.4	72.5	77.0	45.2

※ 배출예정인원 : 군 복무 미필 남자인원 현황임

※ ()안의 인원은 현역입영대상자 편입인원임.

※ 편입현황의 %는 현역입영대상자 편입비율임.

2. 배정기준(2009년도)

가. 자원배정 가용인원 2,500명을 연구기관별로 100% 배정

나. 연구기관별 세부 배정기준

-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등급과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우수한 연구기관 중심으로 요청인원 범위 내에 차등배정(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율 $\Rightarrow$ 2 : 8로 배정)
 - 소요인원 신청업체에 1명 배정(단, 복무관리평가 불합격업체 배정제외)
 - 복무관리평가 우수업체, 녹색성장산업 등 우대배정
- 방위산업 연구기관 :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편입을 감안 배정
-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 전문 연구요원 복무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배정
- 대학원박사과정 및 한국(광주)과학기술원 : 이공계와 기초의 학계 구분하여 총괄배정 및 국비장학생 선발인원 범위 내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만 채용가능
 - ※ 현역입영대상자는 배정하지 않음

다. 산업체를 인원배정 선택한 정보처리 연구기관은 미배정

※ 참고 : 보충역은 배정신청하지 않음.

단,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도 현역과 같이 배정신청

3. 배정제한 및 배정인원 회수

가. 복무관리 부실업체 배정 제한 및 배정인원 회수

- 1) 배정제한 : 다음년도부터
- 2) 배정인원 회수 : 당해연도 배정인원 중 편입처분 되지 않은
배정인원
- 3) 대상 업체
 - 가) 고발 업체 : 3년
 - 나) 경고 업체 : 2년
 - 다) 주의 업체 : 1년

나. 배정 제한 : 다음연도

- 1) 연구기관이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 2)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때
- 3)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를 선택한 연구기관
- 4) 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
- 5) 지방청에서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인 연구기관

專門研究要員 編入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37조
- 병역법시행령 제78조

2. 채용인원 :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

(편입시기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 전문연구요원 편입

가. 편입대상

- 1)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벤처)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3)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
- 4)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은 국비장학생 및 과학기술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나. 병무청장이 정한 세부 편입기준

1) 대학원 계열 및 학과에 의한 편입기준

가) 국내수학자의 편입기준

구 분	대학원 계열 및 학과
○자연계연구기관 - 국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공법인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기초과학육성법) ○대학부설연구기관 (자연계)	○자연계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공학,도시계획학,조경학,이학,공학,약학,농학,수산학,교육학 등)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기초의학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디자인학을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제외 ○이 공계열 학과의 이 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미술학석사(산업·시각·제품·실패·포장디자인 전공)
○인문사회계 연구기관(대학부설포함)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자연계대학원 (과학기술원 포함) 박사과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광주)과학기술원생 중 국비 및 과학기술원 장학생 ○의무사관후보생중 수련기관 수료자(중건의 제외)

나) 국외 수학자의 편입기준

국내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과 및 전공은 국내 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

- (1) 국내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 MASTER OF SCIENCE(미국.유럽) · 修士(일본) · DIPLOMA (독일)	· DOCTOR OF PHILOSOPHY

- (2) 학위증에 의하여 학과·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로 확인 (박사의 경우 석사학위증 첨부)

다)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있는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 (1) 대학원 박사과정 : 석사과정을 이수(석사과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예정된 학기를 마친 자)하고 박사과정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석사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등 수료관계증명서
- ② 박사과정의 재학증명서

- (2)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의 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때

- ① 석사학위 증명서
- ② 박사과정의 재학(수학승인 필요)·제적(중퇴)증명서

라)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방)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동서중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다. 편입원 출원기일

- 1) 편입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2) 입영(소집)통지된 사람은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라. 구비서류

- 1)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서
- 2)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전문연구요원 편입제외 대상자 (병역의무자 기준)

- 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병역 기피자
 - 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불명,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한 자
 - 다.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또는 대리 징병검사자
 - 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위반한자
 - 마.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 이탈자
 - 바.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
 - 사. 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말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 ※ 위의 경우 해당지정업체로의 전직도 제한
- 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 후 다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

5.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사유(연구기관 기준)

- 가.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 경고, 주의처분을 받은 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업체는 현역 및 보충역 편입 제한 및 다른 지정업체로부터의 전직 제한(단,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3호는 제외)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편입신청 ☐ 전 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 유의사항 : 「붙은 선」 안의 빈칸은 모두 기재, 그 밖의 해당란에는 ☑표기										처리기간 · 전문연구편입: 5일 · 산업기능편입: 2일 ·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 취소유보 3일		
공 통 기 재 사 항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구,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통 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 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 · 휴학 · 중퇴 · 야간대재)										
	지 정 업 체 (재직)사항	업 체 명	업체취업일 (승선예정일)									
		소 재 지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대 표 자 관계										
의무종사산업제외 기간 및 사유 (편입지원신청자 해당 없음)										의무종사기간 (년 개월)		
편 입 신 청	☐ 전문연구요원	학위사항	☐ 학사	학교명 (학과)	입학일	휴학/학업중단일						
			☐ 석사	학위명 (학위번호)	학 위 취득일							
	☐ 산업기능요원	자격·면허 (입상경력)	자격·면허명 및 등급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자 (입상일자)					
병역사항		☐ 현역 ☐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 직 등	☐ 전 직	업 체 명	소 재 지									
		전직사유	대 표 자 관계									
	☐ 교육훈련 ☐ 파견 등	업체(기관)명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									
☐ 편입취소유보	해고관련사항	해고사유	해고일자									
		구제(소송) 신청	일 자 접수기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 장 인 시장 · 군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구비서류 · 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뒤쪽)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작성요령	○ 편입신청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을,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시장 · 군수를 기재합니다. -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기재합니다. ○ 전직 등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편입신청 - 공통 성실종사서약서(별지 제64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 면허증 사본(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 · 후계농 · 어업인: 후계농 · 어업인 확인서 ·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제출 서류 없음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사본 ○ 편입취소 유보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 기술자격증(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한함) · 농업기계운전요원: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 · 농업기계수리요원: 기술자격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가. 개별약정

1. 서 약 당 사 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지정업체 (고용주)	지정업체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직위		
2. 근 로 조 건	취업장소(근무지)				취업일		
	종사하여야 할 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휴가		
	임금 지급방법 (연봉 월급 등)						
3. 기타 특별약정							

※ 기타 특별약정란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특별히 정하는 사항 기재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가"의 개별약정 내용 및 "나"의 일반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서약서를 교환한다.

년 월 일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_____ (서명 또는 인)

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_____ (서명 또는 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부당
노동행위나 임금채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
공단(www.klac.or.kr)을 통하여 법률
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기관 [지방병무(지)청]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편입
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나. 일반약정

(뒤쪽)

1. 본 서약은 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 가. 편입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지정업체의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때, 종사중인 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때, 농기계사후봉사사업소의 선정이 취소된 때,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여야 한다.
 - 다. 지정업체장(고용주)의 위법부당한 직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라.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 마.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_____ (서명)

3.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종사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당시 외의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될 경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소집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예규) 제42조(전직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고용주 : _____ (서명)

專門研究要員 管理

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별(연구소)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자체 복무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服 務 管 理]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39조 등
- 병역법시행령 제82조 등

2.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 가.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개인별 복무기록표 및 복무상황부 기록유지 (전산화면 포함)
- 나. 편입당시의 연구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일과 시간 중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영리추구 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
- 다.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 또는 근무조건 금지

3. 겸직금지

- 연구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업무를 겸직 근무할 수 없다
 - 가.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 다.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업무 등의 겸직

※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이 일과시간 중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4. 휴 가

가. 연구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함.

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일수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다.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

5. 병 가

가.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가능(7일을 초과시는 진단서 제출)

나.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

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6. 지참 · 조퇴 등

가. 전문연구요원이 지참 · 조퇴 · 외출 등을 할 때에는 복무상황부에 기재

나. 지참 · 조퇴 · 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

개 인 별 복 무 상 황 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소속 :

○ 편입일자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확인자 : (인)

[illegible]

7. 무단결근자 처리

- 가. 전문연구요원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통산 8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
- 나. 무단결근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 다. 신상이동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라.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종사기간 계산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하여 통보.

무단결근 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재직사항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근무부서		편입일	
무단결근 내용	기 간	. . . ~ . . . (일간)		
	내 용			

※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시에는 병역법 제 40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이 취소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무자 성명 : (서명)

지정업체장 성명 : (서명)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轉 職 制 度]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85조

2. 전직사유

가. 의무전직

- 1)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3)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나. 승인전직

- 1)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1년6월을 경과한 때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하고, 의무종사 제외기간은 산입 제외)
-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4)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5)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7)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가 복무관리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때(전직은 신고자에 한함)

3. 전직대기 기간 등

- 가. 전직대기기간 : 3개월(의무종사기간 산입)
- 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3개월(의무종사기간 산입 제외)
 - 1) 경기 불황으로 휴·폐업 업체가 다수 발생한 때
 - 2) 다수의 지정업체가 구조조정 등으로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전직수요가 증가한 때 등

4. 전직절차 등

- 가.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
- 나.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직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제출 가능
 - ※ 지정업체 장이 전직 부동의에 관한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다. 승인전직시 배정인원 관계
 -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전직을 할 수 있음.

5. 전직승인의 범위

- 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은 편입당시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의 전직
- 나. 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승인여부 결정
- 다. 구조조정 또는 연구분야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 승인
- 라. 의무자의 원에 의해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확정되어 있는 때에 한함
- 마.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시에는 신상이동통보로 같음

6. 전직승인의 제한

- 가.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전직대상 지정업체가 결정되어 의무종사 기간 내 전직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나. 예규 제19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 다.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말한다) 로의 전직
- 라. 편입당시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지정업체로의 전직
- 마. 당해 연구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바.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 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 사.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아. 전직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
- 자.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 차.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 전직

7. 전직승인자의 관리

- 가.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종사하게 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
- 나. 전직 승인을 얻은 전문연구요원이 당초 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당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미산입)

8. 전직승인서 구비서류

- 가.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나. 관련 증빙서류
- 다. 채용 동의서 : 붙임 참조
- ※ 복무기록표 사본 첨부 : 폐지

[유의사항]

- ※ 전직승인시에 업체장의 동의 여부가 전직승인의 전제조건이 아님. 따라서 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채 용 동 의 서

(전직승인 신청서 첨부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편입일자		역 종	현역() 보충역()
학위		전공	취득일
취업예정업체	업 체 명		
	업체소재지		
	대표이사명		
	주 연구분야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연구분야 기술]		
업체장과의 관 계(O표)	부(), 모(), 2촌(), 3촌(), 4촌(), 관계없음() (※혈족범위도 : 자료실 참조)		
※ 4촌 이내 혈족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면 병역법제41조1항, 병역법제92조2항에 의거 의무자는 편입취소, 업체의 장은 고발 조치됩니다. 위와 같이 취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취업예정업체(기관)의 장 (인) (취업동의서 발급업체의 장)			

[教育訓練 및 派遣勤務]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2.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가. 사유

- 1) 3월 이상 국내교육훈련·지정업체가 아닌 파견근무 : 승인
- 2) 3월 미만 국내교육훈련·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이동통보
단, 7일미만 국내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이동통보 같음

나. 승인기간

- 1)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 2)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다.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승인범위

- 1)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내 지정업체간의 파견
- 2)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3) 기업부설연구소중 부소재지의 연구소 파견
- 4)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히 실험장 또는 사업장 파견

※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비지정업체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비지정업체로 파견근무 시키는 지정업체의 장은 비지정업체장에게 실태조사에 협조 요청

3. 국내 출장의 범위

- 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 나.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외의 또는 세미나 참석
- 다.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4. 국내 출장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 협력업체 등에 수급 출장
- 나.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國外旅行 許可]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 병역법시행령 제145조 내지 제147조

2. 허가기간 : 통산 2년 이내

3. 의무종사기간 인정

가. 통산 6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

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4. 국외여행허가 대상범위 등

가. 허가 범위

- 1) 국제회의, 훈련 및 견학 등 연구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 2)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
- 3) 휴가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여행(친지방문 등)

나. 신청시 구비서류

-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지방병무청 민원실 비치
- 2) 업체장의 추천서 : 민원실 비치

5. 국외여행 관련 지정업체 유의사항

가. 국외여행허가기간 준수 철저

- 1)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편입취소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을 1일만 초과하더라도 취소대상

- 2)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 기간 내 귀국조치

나. 국외여행 사후관리

- 1) 비치서류(실태조사시 확인 및 평가대상)

- 여비지급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국외여행중 수행업무 내역서

- 2)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3월 이상 국외여행

- 『국외여행중 수행업무내역서』 작성하여 귀국 후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3) 6개월 이상 국외체재자 : 해당 국가 현지 실태조사 실시

국외여행중 수행업무 내역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편입일		소속부서	
국 외 출 장 사 항			
여행국		여행 목적	기간

○ 수행 업무내역

일자	수행업무 내용
※ 기타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업체의 장(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6.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외여행

목적별	세부사항	구비서류
공동 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 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및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 지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구,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통 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 호										
		국외											
	연락처	집(), 전자우편 휴대전화() (E-mail)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 조			
										확 인			
☐ 최초 허가 신청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당초허가번호 제 호	
☐ 국외체류 증인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 허가 사항	여행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 . .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 . . ~ . . . (일간)												
국내 가족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안내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 외 여 행 허 가 추 천 서				
여 행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추 천 내 용	여 행 목 적 (구체적으로)	여 행(추 천)기 간		여 행 국
		. . . 부터 . . . 까지		
병역법시행규칙 제109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붙임 : 관련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업 체)의 장 (인)				

[修 學]

1.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가. 의무종사기간중 수학할 수 없음(원칙)

단, 박사과정 수학을 원하는 사람은 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나. 대상 : 35세까지 의무종사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자

다. 기간 : 3년 범위 내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라. 신상이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자는 편입과 동시에 수학을 통보한 것으로 봄.

마. 통보절차 : 의무자 → 업체의장 →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방송통신 또는 야간 수업

2)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3)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2.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규정위반 : 편입취소 또는 연장복무

專門研究要員 編入取消

1. 편입취소

가. 편입취소 사유

- 1) 해고·퇴직 및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휴학. 제적된 때
-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3)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5) 지정업체가 폐업, 선정취소로 전직 허용기간 내 (6월) 전직하지 아니한 때
- 6)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한 때
- 7) 위법·부당한 사위행위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때

나. 의무부과 : 원신분 복귀(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 편입취소 완화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 기간, 위반 행위에 따른 연장종사 또는 경고처분 제도 도입

2.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유보

가. 유보사유 : 해고된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

나. 유보원서 제출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제출기관 : 관할지방병무청장

라.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결과 확정시 처리

- 1)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2)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하거나 전직 가능

3. 군복무기간의 단축(1년 이상 종사자)

가. 현역 : 4개월마다 1개월

나. 공익근무요원 : 4개월마다 1개월(중전 방위소집대상자로서 18개월
복무해당자는 6개월마다 1월씩 단축)

※ 가, 나의 단축기간 적용시 의무종사 산입 제외기간은 제외
다. 복무기간 단축이 되지 않는 경우

(1)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에 의한 보충역 및 전공상 보충역

敎育召集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55조
- 병역법시행령 제107조

2. 교육소집

가. 실시시기 : 편입 후 6월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1) 지정업체 장 또는 본인의 희망시기 최대 반영하여 선발하되
계획인원 부족시 편입일자,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2)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구분 실시
- 3) 연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선발

나. 소집기간 : 3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다.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라.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 : 의무종사만료 처분 유보

3. 교육소집 실시 유보

- 가. 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때
- 나. 전직대기 중인 때
- 다. 국외근무 중인 때
- 라.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등

4. 교육소집 기일연기

- 가. 질병,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나. 주요업무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연기가 필요한 때 (다만, 군 계획인원 충원에 지장을 초래하면 기일연기 제한)

5. 교육소집 중 퇴영자 범위 등

- 가. 훈련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
 - 나.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때
 - 다.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때
 - 라. 질병 등 기타 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 ※ 퇴영자는 퇴영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교육소집을 받아야 함.

「별지 제 호 서식」

(앞면)

징병검사 ·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 우선징병검사 ☐ 징병검사일자연기 ☐ 재학생 입영(소집), ☐ 재학생 입영취소 ☐ 입영시기변경 ☐ 입영(소집)일자 연기 ※ 유의사항 : 「굵은선」 란은 모두 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함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별시, 광역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리] [번지] (통 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 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병역사항		☐ 징병검사 대상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대상 ☐ 예비군 ☐ 기 타()									
☐ 징병 검 사 대 상 자	☐ 우선 징병검사 신청(아래 신청사유에 “☑” 또는 입영희망시기 기재) ☐ 산업기능요원 편입 ☐ 국외 출국예정 ☐ 징병검사 받은해 입영희망(입영희망시기 : 월)										
	징병검사 희망일자 년 월 일										
☐ 재학생 입 영 (소집) 대 상 자	학적사항 ※입영(소집) 신청자 공통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재 학 여 부						
					재학 · 휴학 · 퇴학 · 졸업						
	☐ 입영(소집)신청		년 분기 월								
	☐ 입영(소집)신청 취소		[대학(교) 년 재학, 복학] 학업계속								
	☐ 입영(소집)시기 변경신청		년 분기 월(을) 년 분기 월(으로)								
☐ 입 영 (소집) 일 자 연 기	입영(소집)일자	입영(소집)부대	연 기 사 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뒷면 참조											

구비서류 · 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뒷면)

신청사무명 및법령근거	□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병역법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126조 및 제129조)	
작성요령	□ 해당란에 ☒ 표기 □ 입영(소집)일자 연기신청자 등 아래사유 해당자는 “연기사유”란에 기재 ○ 각군지원 : 군별 · 응시지역 및 수험번호 기재 ○ 출국예정 : 허가 지방병무청 및 허가번호 기재 ○ 각급학교 입학시험응시 : 대입수능시험, 대학원 진학원서 수험번호 기재 ○ 검정고시응시 : 응시지구 · 수험번호 기재	
유의사항	※재학생 입영(소집)신청 - 유의사항 •입영(소집)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월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입영(소집)시기 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입영통지된 사람은 변경불가)하며, 시기변경 신청자는 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구비서류	※징병검사·입영(소집)연기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병사용진단서 1부(예비군의 경우 일반진단서 가능) ○ 직계존 ·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 · 사망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경찰관서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1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졸업(수료)증명서 1부 • 재 감 :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1부 • 형제가 동시에 입영(복무)하게 되어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한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복무확인서 1부 • 각종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사람 : 재학(원)사실확인서 1부 •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 청첩장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출장(병력동원훈련소집에 한함) : 해외출장증명서 1부 •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병력동원훈련소집에 한함) : 재학증명서 사본 및 학사일정표 • 주요업무 수행(병력동원훈련소집에 한함) : 재직증명서, 주요업무수행입증서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병무청 (사무소)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과 통보 ← 결 채	

身上移動 通報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 40조
- 병역법시행령 제91조

2. 신상이동 통보 사유

가. 지정업체에 관한 사항

- 1)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2) 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3) 지정업체로서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4)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다른 업체와의 합병한 때

나.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사항

- 1) 해고, 퇴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 제적된 때
-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3)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때
- 4)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5) 휴직, 정직 및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 6)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가, 휴직, 결근한 때
- 7) 3월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하게 된 때
- 8)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때
- 9) 지정업체간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10)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때
- 11)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12)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한 때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01.5.2>

업 체 명(기관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 년 월 일
 받 음 발 신 인

제 목 신상이동통보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과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 입 일	신상이동사항	발생일자

나.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 체 명	변경사 항	사유발생일	변 경 전	변 경 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義務從事 滿了處分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90조

2.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가. 의무종사기간의 기산일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날

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공상은 제외)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복무기간 인정 국외여행기간은 제외)

(5)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소송 진행기간

(6) 3월을 초과한 전직대기기간

(7) 기타 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 기간

3. 복무만료 처분

가. 복무만료대상자 신고 :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만료자 명단 및 복무기록표 등 송부

나. 복무만료처분 :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 1일에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만료처분

다. 복무만료자는 향토예비군에 편성

指定業體 實態調査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43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2. 실태조사 실시(전 지정업체 불시조사)

가. 정기 실태조사(매년 1회)

- 1)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실태
- 2) 신상이동통보 등 자원관리실태
- 3) 지정업체 선정취소사유 해당여부 및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나. 수시 실태조사

- 1) 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이 의무종사 중인 업체
-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실태조사 결과처리 기준

가. 고발업체 : 다음연도부터 3년간 인원배정 제외(배정인원 회수)

나. 경고업체 : 다음연도부터 2년간 인원배정 제외(배정인원 회수)

다. 주의업체 : 다음연도부터 1년간 인원배정 제외(배정인원 회수)

4.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가. 신고대상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하게 된 사람

나. 신고기관 : 관할지방병무청장

다. 사실조사 : 5일 이내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결과통보

라. 신고자 처리

- 1)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 유지
- 2)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고발, 경고, 주의처분에 해당되면
신고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가능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전직신청)

5. 실태조사시 지적된 결함유형별 사례

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1) 편입당시부터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우
- 2) 편입이후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 3)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파견·출장근무 한 경우 등

나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근무 사례

- 1) 연구업무가 아닌 사무직·영업직 등 비해당분야 근무한 경우
- 2) 연구업무와 사무직·영업직 등을 겸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 3)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여 근무
하는 경우

다. 신상이동통보 소홀

- 1) 지정업체 소재지 변경사항 미통보
- 2) 병가, 휴직, 퇴직사항 미통보

라. 자원(명부)관리 부실

-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미관리
- 2)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정리 부실

마. 출·퇴근, 지참, 조퇴, 병가, 휴가, 외출 등의 복무상황관리 소홀
(복무상황부 미관리 또는 미정리)

[별표 3] <개정 2001.3.27, 2004.2.9, 2006.9.22, 2008.10.8>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

(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 형	내 용	처 리 기 준	
		위 반 기 간	의무자
1.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	3월 이상	연장종사
		1월 이상 3월 미만	경 고
		1월 미만	시 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	3월 이상	연장종사
		1월 이상 3월 미만	경 고
		1월 미만	시 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	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때	1월 이상	연장종사
		1월 미만	경 고
4. 수확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확한 때		연장종사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편입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연장종사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경 고

※ 유형별 연장종사 위반기간 초과시 : 편입취소

『 별표 4 』 <개정 2002. 1.29, 2004. 3.16, 2005.10. 5, 2006.11.1, 2007.10.23, 2008.12.29>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 분
1. 편입당시 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 ·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 출장 · 파견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연구 · 기술자격 · 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 · 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 · 기술자격 · 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 · 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기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지정업체의 이사 · 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5.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신상이동통보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0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라 함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指定業體 平價

1. 관련법령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2. 평가대상 및 방법

가. 모든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복무관리실태를 평가(평가가 곤란한 분야는 평가 제외)

- 1) 평가제외 : 인문사회계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 농·어업분야
- 2) 기본평가 :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실태 평가(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 3) 수시평가 : 제도 운영 실태 등 가·감점요소 평가(연중)
- 4) 종합평가 : 기본평가 점수와 수시평가 점수를 합산(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
 - ▶ 합 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 ▶ 불합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3. 기본평가 항목 및 배점

가. 4개 항목 9개 평가사항에 대해 80점 만점 평가

항목	평가사항	배점
업체사항 (10점)	휴업, 영업정지, 조업 중단 여부	5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복무사항 (40점)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종사 여부	30
	출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10

항목	평가사항	배점
행정사항 (20점)	신상이동사항 통보의 적정성 여부	10
	부채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10
기타사항 (10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5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3
	교육소집 중 급여 지급 여부	2

3 수시평가 항목 및 배점

가. 가점요소 5개 항목 30점 만점 평가 및 감점요소 11개 항목 평가

나. 가점요소

1) 배정인원 채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7점 가점

※ 종합 평가하는 해의 9월 30일 편입자 기준, 현역 및 보충역
배정인원 100% 편입 업체 ⇨ 편입율 향상 및 조기 편입 유도

2)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 보도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포상된 경우
5점 가점

3)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3	5	의무전직자 편의 제공

4) 병무청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구 분	채용공고	편입실적		비 고
		2명이하	3명이상	
가 점	2	3	6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유도

5)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자식시스템(지문·홍채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출·퇴근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5점 가점

다. 감점요소

- 1)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감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10점 감점
- 3)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 보도된 경우

※ 민원 건당 5점, 보도 건당 10점 감점,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감점

- 4) 각종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행정처분기간 만큼 감점)

구 분	고 발	경 고	주 의	시 정	비 고
감 점	40	30	20	5	법규위반자 가중 처벌인식 확산

- 5) 평가 전년도에 당해연도 배정인원을 그해 9월 30일까지 반납하지도 않고 12월 31일까지 편입시키지 않아 배정인원이 남은 경우 10점 감점
- 6)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점 범위내 감점
- 7) 영 제85조제2항제3호(생산설비 이전과 동일법인 내의 폐쇄·축소사유 제외), 제5호, (통산 3월 이상 임금체불), 6호(위법부당한 해고), 9호(위반행위 내용 신고) 사유로 전직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 8)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관할지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업체 포함) 20점 감점
- 9)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지정업체장의 해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20점 감점
- 10)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 11) 지정업체장이 편입원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입영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4. 평가결과의 적용

○ 합격업체 : 인원배정

※ 지방청별로 기업부설연구기관과 기간산업체중 평가점수 상위 10% 내외 업체 인원배정 우대

○ 불합격 업체 :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關聯簿冊 整理要領

1. 관련법령

- 병역법 제43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2. 관리요령

- 가. 전문연구요원 명부 : 복무자 전원 등재 관리
→ 편입일자 빠른 순으로 작성(편입즉시 등재)
- 나. 출근부 : 개인별로 매일 파악
→ 매월 출·퇴근기록을 출력하여 따로 관리
- 다. 복무기록표 : 편입일자 순으로 관리
→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이동사항을 기록
- 라. 복무상황부 : 개인별로 작성·관리
→ 결근·조퇴·외출·출장사항 등을 기록
→ 지정업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의무종사 만료시 까지 관리
※ 단, 복무상황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때에는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출력하여 별도 관리
- 마. 신상이동 통보 및 의무종사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 : 별도 관리

3.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 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록표는 편입일자 순으로 인사기록표에
준하여 별도 관리
- 나.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상이동사항 등 복무사항을
기록 관리

- 1) 복무사항란 :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일자, 근무부서, 보직, 파견, 전직, 해외연수, 박사과정의 수학 및 교육훈련사항 등을 정리(입력)
 - (2) 신상이동란 : 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사항을 정리(입력)
 - (3) 교육소집란 : 교육소집을 마쳤을 때 교육소집 부대명, 소집 기간 및 군번을 기록(입력)
 - (4) 복무기록표(이면) :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 기록(입력)하고,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 일자 및 확인결과를 기록(입력)유지
- ※ 7일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은 신상이동통보 대신 복무기록표에 기재, 용지가 부족시 별지로 작성

4. 관리목록

관 리 문 서	관 리 내 용
전문연구요원 명부	○ 별지 제67호 서식 - 복무자 전원 등재 관리 - 처분일자가 빠른 순
복무기록표 관리	○ 별지 제68호 서식 - 편입당시 지방병무청 작성 송부 - 인사기록표 관리요령에 준하여 별도관리 - 신상변동사항 등 복무기록 - 복무만료시(원본 송부) 제출
신상이동통보 관계철	○ 별지 제76호 서식 - 신상이동 사유발생시 14일 이내에 의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인사담당 복무관리 교재	○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 관계철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철(업체) ○ 의무종사 복무만료철(지방병무청)

6. 복무확인서 발급

-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군 번	
	주소				
복무 사항	지 정 업체명		복무분야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 입 연월일	. . .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 . .	
용도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기타 ()				
※ 참고 사항	의무종사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무종사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번호	년 월 일				
확 인 자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정업체의 장) ①				

參 考 事 項

○ 산업지원관련 민원안내(주소 및 전화번호)

- 병무청 인터넷 주소 : [www. mma.go.kr](http://www.mma.go.kr)
- 병무민원자동안내서비스 : 1588-9090(국방국방)
(전국 어디서나)
- 산업지원관련 병무청 및 지방청 주소, 민원안내 전화번호

청 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병무청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대전청사3동(둔산동 920)	302-701	042-481-2816 042-481-2818	042-481-2819
서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신길7동 산 159-1)	150-057	02-820-4491 02-820-4492	02-820-4307
부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산로 637	613-824	051-667-5257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07 (전동 23-2)	700-030	053-607-6282	053-607-6250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242(화서동 53-2)	440-151	031-240-7216 031-240-7281	031-240-7260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금정1길 (학1동 69)	501-745	062-230-4315	062-230-7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22 (문화동 1-6)	301-706	042-250-4314	042-250-4479
강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15(효자2동 349-2)	200-948	033-240-6309	033-240-6260
충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무로 16(사직동 38)	361-100	043-270-1312	043-270-1370
전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1길 24(남노송동 519-12)	560-110	063-281-3312	063-281-3250
경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 (신월동 103-3)	641-709	055-279-9314	055-279-9385
제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22 제주종합청사 3층	690-806	064-720-3251	064-720-3260
경기북부 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병무청길 34 (호원동 274-2)	480-854	031-870-0253	031-870-0269
강원영동 병무지청	강원 강릉 남강로 262 (노암 200-11)	210-210	066-649-4252	066-649-4280